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2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9월 8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2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개정(안 제2조, 제3조)
- 적용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개정(안 제4조, 제5조)
-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개정(안 제6조 ~ 제8조)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교육 및 홍보 신설(안 제9조, 제11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2022년 이후 가족이 아닌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한편, 1인가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가구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1인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45% 수준으로 나타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독사”는 2021년 제정 후에 두 차례나 개정됨. 이에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각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명확성 및 입법경제성을 높이하고자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및 단계별(사전에 방·사후대응) 정책 수립·시행을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적용범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까지 포괄하고자 함.

- 안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는 계획 수립에 생애주기별 예방대책과 연구지원 등을 추가하여,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추진과 전문적인 지원을 도모함.
- 안 제6조(실태조사)는 성별, 나이, 장애 여부·유형, 거주형태 등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사항을 반영함.
- 안 제7조(지원대상)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규정하여, 현행 사항을 반영함.
- 안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는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민간인력 운영·활동 지원 ▲생전(生前)정리서비스 ▲개입거부 가구 사회참여 유도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현행 사항을 반영함.
  - 한편, 생전(生前)정리서비스는 생활보장과에서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으로 시행중임.
- 안 제9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전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집행부서에서는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함.
  -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고독사와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영등포구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될 상황에 대비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교육 및 홍보)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구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3조(표창)는 관련 사업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로자를 격려하고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원제

획의 세부 내용 보강 ▲지원사업의 명문화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고독사와 영등포구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br>번 호 | 601 |
|------------|-----|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전승관·차인영·이성수  
이예찬·정선희 의원(5인)

##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개정(안 제2조, 제3조)
- 나. 적용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개정(안 제4조, 제5조)
- 다.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개정(안 제6조 ~ 제8조)
- 라.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교육 및 홍보 신설(안 제9조, 제11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  
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  
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가구(거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  
어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제4호 중 “고립의 위험자”를 “고립”으로, “홍보”를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제6조제2항 중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을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을 “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0. 생전(生前) 정리서비스 지원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유형, 거주 형태 등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u>삭 제</u><br>2. “ <u>고독사</u> ”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br>3.·4. (생략)<br>5.“ <u>무연고 사망자</u> ”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br>-----.<br><br>2. “ <u>고독사</u> ”란 「 <u>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다.<br><br>3.·4. (현행과 같음)<br>5. “ <u>무연고 사망자</u> ”란 「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략)<br><br><u>&lt;신 설&gt;</u>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u>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 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거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  
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  
협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에 관한 사항

<신 설>

- ## 6.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

제4조(적용범위) ----- 「주민  
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  
----- 주민-----  
-----  
-----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  
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고립 -----  
----- 연구지원 -----  
-----
5.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태조사를 실

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2. (생략)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7. (생략)
- <신설>

8. (생략)
- <신설>

<신설>

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 · 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

제7조(지원대상)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 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 연계를 위한 민간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9. (현행 제8호와 같음)
10. 생전(生前) 정리서비스 지원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

9.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제9조 (생략)

<신설>

제10조 (생략)

<신설>

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2.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유형, 거주형태 등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고독사 예

|                          |                                                                                                                                                                     |
|--------------------------|---------------------------------------------------------------------------------------------------------------------------------------------------------------------|
| <p><u>제11조</u> (생 략)</p> | <p><u>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 <p><u>제14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